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584
----------	------

2026년 4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6년 3월 30일
다. 회부일 : 2026년 3월 31일
라. 상정일 :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6년 4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회)

-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계정의 구분 및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안 제5조~제7조)
 -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 (안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6. 2. 26. ~ 3. 1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강북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사업 목적에 따라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기금 운용 부서를 도시공간전략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주요 조문별 검토”

(1) 계정의 구분 및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안 제5조~제7조)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¹⁾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즉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단일 계정 기금을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 내에 전용 계정을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하여 재원 배분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p>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기금 내 계정 분리는 필연적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수반하며 현행 단일 계정 기금 체계에서도 매년 시의회 의결을 받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강북지역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계정 분리에 따라 계정 간 전출입 절차, 계정별 운용실적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검토 범위 확대 등 행정적·절차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계정 분리가 갖는 정책적·재정운용상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p>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현 행	개 정 안
<p>와 그 밖의 부대경비</p> <p>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p> <p><신 설></p>	<p>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p> <p>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p> <p>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p> <p>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p> <p>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p> <p>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p> <p>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p> <p>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 터의 전입금</p> <p>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p> <p>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p> <p>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 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p> <p>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p> <p>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p> <p>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p>

현행	개정안
	<p>와 그 밖의 부대경비</p> <p>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p>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강북등발전계정의 용도를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물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어디에도 ‘강북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구역 또는 지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등(等)’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향후 기금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조례에서 ‘강북등’의 범위를 정의하거나 최소한 기금운용계획 또는 관련 지침에서 대상 지역의 범위, 선정 기준, 예외 허용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의회가 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안 제6조제2항)과 강북등발전계정(안 제7조제2항)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강북등발전계정의 경우 각 사업비 항목에 ‘강북등발전에 필요한’이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이나 노후 기반시설의 재설치 등 핵심적인 사업 유형과 내용은 두 계정이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용도	강북등발전계정 용도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용도	강북등발전계정 용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 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 두 계정은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아닌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적 범위만 구분하는 구조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에서 ‘강북등’의 지역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의 계정 선택을 집행부의 판단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계정별 대상 지역 및 사업의 선정 기준, 연도별 계정 간 재원 배분 원칙, 계정 간 전출입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운용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임

(2) 기금관리공무원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와 제10조는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공간전략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에 대한 도시계획과 업무 이관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 관리 주체를 현 본부·부서 담당업무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강북지역 등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단일 기금 체제에서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탄력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수반하는 계정 분리 방식을 택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행정적 당위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조례상 ‘강북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향후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지역의 구체적 범위와 사업 선정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 또한 계정 분리를 통해 강북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한 만큼 당초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 기금 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p>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p>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p>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신 설>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제8조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 ~ 제13조 (생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시계획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84
----------	------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정의 구분 및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안 제5조~제7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안 제8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6. 2. 26. ~ 3. 1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2133-695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p> <p>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p> <p>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p> <p>2. 강북등발전계정</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p> <p>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p> <p>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p> <p>3.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p> <p>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p>	<p>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p> <p>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p> <p>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p> <p>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p> <p>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p> <p>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p>

<신 설>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
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
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
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
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
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
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
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
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
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전략과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 ~ 제13조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시계획과장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계정의 구분과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02-2133-6956)